

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1992. 10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(대통령령제13411호 '91. 6. 29) 및 충청북도 직제규칙 개정(충청북도 규칙제1779호 '91. 7./ 19)에 따라
- 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대규모소매점의 매장면적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을 그 직능과 개정된 직위로 변경 코자함.

3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제2조 제2호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“매장면적 2천제곱미터이상”을 “3천제곱미터 이상”으로
-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“식산국장”을 “농어촌개발국장”으로 “건설 국장”을 “건설도시국장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3. 근거 법령

- 도·소매업진흥법(법률제4380 '91. 5. 31)
-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(대통령령제13411호 '91. 6. 29)
- 충청북도직제규칙(충청북도 규칙제1779호 '91. 7. 19)

4. 예산상황 : 해당없음.

5. 기타참고사항 : 별첨

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기능) 제2호중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“(매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함)”을 “(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함)”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제2항제1호중 “식산국장”을 “농어촌개발국장”으로 하고 “건설국장”을 “건설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</p> <p>제2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별 도·소매업진흥 계획 수립 2.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(매장면적이 <u>2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함</u>) 3.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변경권고 4.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 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5. 기타 도·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식산국장</u>, 지역경제국장, <u>건설국장</u> 2.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3.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, 도시계획전문가, 건축전문가, 소비자단체대표 및 관련업계 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	<p>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(----- 3천제곱미터 -----) 3. ----- ----- 4. ----- ----- 5. ----- -----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어촌개발국장, -----, 건설도시국장 2. ----- 3. ----- -----